



## 브로큰베이 가톨릭 교구

### 방문 성직자 및 수도자 정책

대중사역을 위해 방문하거나 교구 정책에 따라 거주하는 교구에 입적되지 않은 성직자 및 수도자로 사목 수행에 합당한 사역자

#### 적용 및 범위

본 정책은 교구 내에 사목을 목적으로 방문한 타 교구 성직자 및 수도자, 또는 해당 교구에 거주하는 타 교구 성직자 및 수도자에게 적용됩니다.

#### 목적

호주에서 목회하는 모든 성직자와 수도자는 호주 가톨릭 교회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. 입적되지 않은 교구에서 대중사역을 수행하거나 거주하는 방문 성직자와 수도자이 지켜야 할 구체적인 요구 사항들이 있습니다. 교회 요건 외에도, 방문 성직자와 수도자는 NSW 주 아동보호법(Children's Guardian Act 2019 (NSW), 신고 대상 행동에 대한 대응 정책 참조) 및 아동보호(아동관련업무)법(Child Protection (Working with Children) Act 2012: 이하 '법', 심각한 피해 위험 신고 의무 정책 참조) 및 아동보호(아동관련업무)규정(Child Protection (Working with Children) Regulation 2013: 이하 '규정', 아동 관련 업무 허가증 정책 참조)을 온전히 준수해야 합니다.

#### 정책

브로큰베이 교구는 본 교구에 입적되지 않은 성직자와 교구에서 대중사역을 하거나 거주하는 수도자들이 교회의 요구 사항과 종교 사역자에 관련된 법률들을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이는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려는 교구의 노력입니다.

#### 정의

호주 가톨릭 사목자 등록부 (Australian Catholic Ministry Register: ACMR)	ACMR 은 가톨릭 당국이 새 관할 구역에 사역을 하러 오는 성직자 또는 수도자를 확인하여 성직자/종교 신분이 양호한지 알려주는 온라인 체계
교회 책임자(Church Authority)	부제 또는 사제의 경우는, 성직자의 주교 주교의 경우는, 주교가 은퇴한 교구의 주교 수도자의 경우는, 수도자의 지방 또는 지역 대표
타 교구에 입적된 성직자	브로큰베이 교구가 아닌 다른 교구에 입적된 부제, 사제, 주교
바른 품행(Good Standing)	품행이 바른 성직자 또는 수도자란 다음을 의미합니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해당 성직자/수도자에 대한 범죄 기록이 없고, 사실이 입증된 학대 신고가 없으며, 형사 고발을 당한 적이 없고, 정직 처분을 받거나 정식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자로 사목직을 수행하는데 하자가 없는 사람</li> </ul>

- 해당 성직자/수도자에 대해 교회 책임자에 제기된 학대 불만 신고가 없는 사람
- 해당 성직자/수도자가 교구에서 사목직을 수행해도 아동, 청소년 또는 취약한 성인에게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교회 책임자가 인증하는 사람
- 해당 성직자/수도자에게 치료되지 않은 알코올 또는 약물 남용 문제가 없다고 교회 책임자가 인정하는 사람

해당 성직자/수도자의 배경이나 사역 활동에 부적합하거나 사목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행위도 교회 책임자에 보고된 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.

#### Greater Sydney Ministry Card

사역증(Ministry Card)은 성직자가 대교구/교구(브로큰베이, 파라마타, 울릉공, 시드니) 내에서 교회 절차와 민사 요건을 준수하면서 각 대교구/교구장에게 별도의 문서를 제공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목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분증

#### 수도자

봉헌 생활회(Institute of Consecrated Life) 또는 사도 생활단(Society of Apostolic Life) 회원

### 타 교구 입적 성직자와 브로큰베이 교구에 거주하거나 대중사역을 수행하는 수도자를 위한 교회 절차

**호주 가톨릭 대응 프로토콜(The National Response Protocol : NRP)**은 호주 가톨릭 교회 직원을 상대로 한 학대 신고에 대해 대응 원칙과 절차를 제공하는 문서입니다. NRP 는 모든 교회 직원이 성실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며, 품행이 바른 성직자를 임명, 이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.

#### 1. 바른 품행(GOOD STANDING) 선언

- 1.1. 개인의 바른 품행 선언은 개별 성직자/수도자가 사목자로서 자신의 적합성에 대해 선언하는 것입니다.
- 1.2. 교회 책임자가 개별 성직자/수도자를 위해 제공하는 바른 품행 선언은 해당 단체가 이러한 사목자의 선언을 지지한다는 증거입니다.
- 1.3. 제 1.1 항 및 제 1.2 항에 언급된 두 선언문이 Safeguarding Office (Chancery 및 사목구) (이하 'Safeguarding Office')에 제출되면, 교구 총대리와 협의하여 해당 정보에 대한 평가를 시작합니다. 그런 다음 평가 결과를 해당 성직자/수도자, 교회 책임자, 그리고 방문할 사목구, 또는 성직자/수도자가 거주하게 될 사목구에 서면으로 전달합니다.

#### 2. 호주 가톨릭 사목자 등록부(ACMR)

- 2.1. ACMR 의 감독과 관리는 Australian Catholic Safeguarding Ltd 가 담당합니다.
- 2.2. 일단 성직자/수도자가 등록부에 등록되고 ACMR 식별 번호(ID 번호)가 발급되면, 호주 전역의 모든 대교구/교구에서는 ID 번호를 사용하여 성직자/수도자의 사목 수행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- 2.3. 그런 다음 Safeguarding Office 는 교구를 방문 및/또는 거주하면서 대중사역을 수행하려는 성직자/수도자의 ID 번호를 확인합니다. **참고: ACMR ID 번호 확인이 WWC 확인을 대체하지는 않습니다.**

### 3. 사역증(성직자 전용)

- 3.1. 시드니, 브로큰베이, 파라마타, 울릉공 대교구/교구는 성직자가 대교구/교구에서 사목직을 할 때 민법과 교회 정책을 준수하도록 상호협약서(Memorandum of Understanding: **MoU**)를 체결합니다. 상호협약서에는 대교구/교구 4 지역 주교들의 서명과, 대교구/교구에 임명된 사제들의 교회 책임자(**Church Authority**) 관구장/장상과 체결한 추가 협정이 포함됩니다.
- 3.2. 사역증은 신청을 통해 발부되며, 상기 나열된 대교구/교구에 임명되거나 임직된 사람에게만 발급됩니다. 사역증 소지자는 민법과 교회 요건을 모두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.
- 3.3. 사역증 신청은 Safeguarding Office 에서 관리합니다. 성직자는 사역증을 받으면 **제 4.1 항**에 언급된 4 개 대교구/교구 전체 또는 일부에서 공적으로 사목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.
- 3.4. 혼인성사는 사역증 소지만으로는 수행할 수 없고, 혼인성사를 수행하기 원하는 성직자/수도자는 대교구/교구에 **Faculty of Marriage**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.

### 4. 1 주일 이상 대리로 사목하게 되는 방문 성직자 및 수도자

- 4.1. 교구에 임명된 사제가 1 주일 이상 휴직을 하게 되는 경우, 휴직 이전에 교구 총대리의 허가를 받아 휴직 기간 동안 사목을 대신 수행할 사제를 고용해야 합니다.
- 4.2. 임명 사제는 필요한 서류와 함께 추천하는 대체 사제의 이력서(**CV**)를 제출해야 합니다. 방문 사제가 해외 출신인 경우는 추천서와 함께 비자 사본도 필요합니다.
- 4.3. 대체 사제는 사목 기간 첫 주 이내에 **Safeguarding** 신규 교육을 완료해야 합니다. 이 신규 교육은 **Safeguarding Office** (**Chancery** 및 사목구)에서 진행합니다.

### 5. 해외 성직자 및 수도자 방문

- 5.1. 바른 품행에 대한 개인의 선언서를 제출합니다.
- 5.2. 성직자/수도자의 바른 품행을 증명하는 소속 교회 책임자가 작성한 선언서 또는 **Celebret cf (교회법 903)** 를 제출합니다.

선언서 양식은 교구 **Safeguarding Office** 에서 받을 수 있으며, 방문 성직자/수도자가 작성해서 **Safeguarding Office** 에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.

**Safeguarding Office** 는 방문 성직자/수도자가 NSW 주 아동 관련 업무 허가증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와, 면제가 적용될 경우 적용되는 면제에 대한 세부 사항이 잘 기록되었는지를 확인할 것입니다.

**Safeguarding Office** 는 위의 제 5.1 항 및 제 5.2 항에 언급된 문서를 수령하면 교구 총대리 및 보호 관리자(**Manager for Safeguarding**)와 협의하여 제출된 정보들을 평가하게 됩니다. 평가 결과는 성직자/수도자가 방문하기 전에 서면으로 성직자/수도자, 교회 책임자 및 방문할 본당에 전달됩니다.

### 6. 혼인성사를 수행하는 성직자 및 수도자 방문

- 6.1. 혼인성사를 위해 방문하는 성직자는 먼저 총대리에게 방문 허가를 요청하고, 총대리로부터 **Faculty of Marriage** 를 발부받아야 성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.
- 6.2. 먼저 혼인성사를 받는 사람들의 이름을 포함하여 방문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출하고, 총대리는 제공된 정보들을 **Safeguarding Office** 에 제출하여 심사를 수행하고 **Faculty of Marriage** 등록을 준비합니다.

- 6.3. 심사가 완료되면 총대리는 상세한 세부 사항 및 Faculty for Marriage 사본이 포함된 방문 확인 이메일을 성직자에게 전달할 것입니다.

## 7. 성직자 등록부(성직자 전용)

- 7.1. 모든 임명, 입적, 방문 성직자는 소속 교구 밖에서 사목직을 수행하게 되는 경우 사역을 수행하는 교회 또는 무교구 채플(non-parochial chapel)의 성직자 사역 등록부에 서명해야 합니다.
- 7.2. 본당은 정기적으로 성직자 등록부를 평가하고, 감사에 대비하여 '방문 성직자 등록부(Parish Office Register of Visiting Clergy)'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. Safeguarding Office 는 연 2 회 사목구 사무소 방문 성직자 등록부(Parish Office Register of Visiting Clergy Register) 감사를 실시합니다. 채플 등록부(Chapel Registers)에 대한 감사는 연 1 회 실시됩니다.

## 8. 본당 주임 사제/교구장의 행정 책임

본당 사제/교구장은 본당을 방문하는 성직자와 수도자가 사역을 수행하기 전에 Safeguarding Office 를 통해 필요한 사전 심사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. 또한 사목구 직원이 방문 성직자 절차(Visiting Clergy Processes)를 이해하고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당 주임 사제/교구장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.

- 8.1. Safeguarding Office 에서 제공한 사목구 방문 성직자/수도자 허가 기록을 검토합니다. 기록은 위임받은 사목구 사무소 직원이 입력하고 방문 성직자 사목구 사무소 등록부(Visiting Clergy Parish Office Register)에 보관합니다.
- 8.2. 방문 성직자 사목구 사무소 등록부(Visiting Clergy Parish Office Register)와 성직자 사역 등록부(Sacristy Ministry Register)에 보관된 데이터를 3 개월 동안 교차 확인한 결과를 확인합니다. 교차 확인은 위임받은 사목구 사무소 직원이 완료합니다.
- 8.3. 사목구 사무소 직원과 논의하여 교차 확인 과정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Safeguarding Office 에 보고하고 후속 조치를 취합니다.
- 8.4. 감사 목적으로 제출하기 전에 사목구 사무소 직원이 작성한 방문 성직자 사목구 사무소 등록부(Visiting Clergy Parish Office Register)를 검토합니다. 검토가 끝나면 등록부에 승인 내용을 서명하고 Safeguarding Office 에 제출합니다.
- 8.5. 감사 후 제안된 조치들을 실행합니다. 사목구 사무소 직원을 도와 제안 사항들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.

## 참고 문헌

아동양육법(Children's Guardian Act 2019 (NSW))

아동보호(아동관련업무)법 (Child Protection (Working with Children) Act 2012 (NSW))

아동보호(아동관련업무)규정 (Child Protection (Working with Children) Regulation 2013 (NSW))

## 관련 양식

바른 품행 개인 선언(Personal Declaration of Good Standing)

바른 품행 교회 책임자 선언(CHurch Authority Declaration of Good Standing)

## 관련 정책

아동 업무 허가 정책(Working with Children Check Policy)

신고 대상 행동에 대한 대응 정책(Responding to Reportable Conduct Policy)

심각한 피해 위험 신고 의무 정책(Risk of Significant Harm Mandatory Reporting Policy)

## 정책 검토

Safeguarding Manager(Chancery)가 매 4 년마다 Safeguarding Officer (Chancery)와 협의하여 본 정책, 관련 양식 및 자료를 검토하고 교구 주교의 승인을 받습니다.

## 개정/수정 이력

날짜	버전	현재 제목	변경 사항 요약	승인 날짜	적용 개시 날짜
14/08/18	1.	방문 성직자 및 수도자 정책	신규	2018 년 8 월	2018 년 8 월
17/06/20	2.	방문 성직자 및 수도자 정책	Safeguarding Office 의 정확한 이름을 포함하도록 업데이트함  AMCR 호주 행정 세부 정보 업데이트 및 본당 주임 사제/교구장의 행정적 책임 포함	2020 년 7 월	2020 년 7 월
29/03/21	3.	방문 성직자 및 수도자 정책	참고 문헌에서 '치유를 향하여(Towards Healing)' 삭제. 호주 가톨릭 대응 프로토콜 및 ' Good Standing Declaration(바른 품행)' 용어 추가	2021 년 3 월	2021 년 3 월
12/12/23	4	방문 성직자 및 수도자 정책	채플 감사 포함  Good Standing Declaration(바른 품행) 양식 및 ACMR 을 NRP 와 연결	2024 년 3 월	2024 년 3 월

## 승인 날짜/개정 일정

승인자: 앤서니 란다조 주교님

날짜: 2024 년 3 월 13 일

개정 예정: 2026 년 3 월 13 일